

# Survey 위탁계약서

2010.10.04

**위탁자: (주)KB손해사정**

**106-86-30223**

리카운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유상현

**수탁자:** \_\_\_\_\_

서비스      손해사정

106-86-30223

리카온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유상현

(주)KB손해사정 (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_\_\_\_\_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7호 (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자동차보험 사고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 목적)

동 계약은 본 계약서 7조(계약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통상적인 손해사정업무의 위임과 관련해서 제반 업무처리 방법 및 그와 관련된 “위탁자”와 “수탁자”的 권리와 의무를 사전에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수사항)

“위탁자”는 KB손해보험으로부터 위탁 받은 손해사정업무를 본 계약내용에 따라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한다.

## 제3조(업무 범위)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의뢰를 받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보험사고 관련 보험금 손해사정
2. 분쟁 및 소송건의 자문
3.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 업무



② 손해사정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발생의 사실 확인 및 원인(면책 여부) 조사
2.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3. 손해액 조사 및 과실 여부
4.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5. 기타 “위탁자”가 요구하는 손해사정 관련업무

③ “위탁자”가 동조 제1항 제1호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당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의 업무처리지연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피해물의 간접손해 등의 손해가 늘어난 경우 그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제4조(손해사정 보고서의 제출)

“수탁자”는 “위탁자”로 부터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의뢰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일로부터 2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하고 의뢰업무가 완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를 포함한 보험금 손해사정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자”로부터 해당 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수정을 요청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① “수탁자”는 손해사정보고서 원본을 관할 보상센터에 우편 또는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송부 한다.
- ② “수탁자”는 손해사정보고서 원본을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위탁자”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업무 수행시 의무사항)

“수탁자”는 본 계약서 상의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의 위임이 있을 때에는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자체 없이 관련자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의 손해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충분한 조사를 행하지 않고 손해사정 업무를 종결 지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자”的 요청이 있을 시에 수임업무의 처리상황 및 기타 관련자료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수임업무와 관련하여 “위탁자”的 계약자, 피보험자 등 “위탁자”的 고객에 대하여 친절하고 성실한 응대로서 “위탁자”的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위탁자”的 승낙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수임업무를 자기에 갈음하여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 ⑥ “수탁자”는 “위탁자”的 승낙 없이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금을 합의 할 수 없다.



## 제6조(보수의 지급 방식 및 시기)

- ① “위탁자”는 “수탁자”的 최종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보험금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손해사정보수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 계약자 및 피보험자간의 보험금과 관련한 손해사정 내용의 미비, 오류 등으로 최종손해사정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및 정정된 최종 손해사정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전항의 보수의 산정은 [붙임 1] 보수정산 기준표에 따르며, 해당 보수표에 없는 사항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7조(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2019년 10월 05일부터 2020년 10월 04일까지 유효하다.
- ② 단, 계약기간 중에 “위탁자”가 의뢰한 업무가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동 업무의 완료 시까지 조속히 이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8조 각호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 만료전 30일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계약 만료 전 30일까지 별도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관련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및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자”와 “수탁자”가 당해 사업을 휴, 폐업하거나 양도 하였을 때
- (단, 이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 통보 없이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자동 해지 된다.)
- ②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평가한 분기별 실적이 2회연속 C등급인 경우
- ③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 및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계약해지일 당시 이미 손해사정보고서가 제출되었거나 진행 중인 위탁 건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 존속된다.
- ④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본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위탁자”가 “수탁자”的 동의 없이 임의로 잔존물을 처분함으로써 “위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청구 서면의 도달로써 해지된다.

## 제9조(계약의 효력)

- ① 본 계약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서명날인 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체결일

이전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전계약을 따르며,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위탁된 건에 대하여는 새로이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른다.

## 제10조(선정기준 및 평가)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반기별 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등급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붙임 2] “세부평가항목”에 의한다.

1. S등급: 반기평가 90점 이상 업체
2. A등급: 반기평가 80점 이상 업체
3. B등급: 반기평가 70점 이상 업체
4. C등급: 반기평가 70점 미만 업체

## 제11조(기밀유지 의무)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호 취득하게 되는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정보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고객의 정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3] “고객신용정보 보안 관리 약정”에 의한다. 이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계속하여 효력을 지닌다.

②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 1항 위반, 비밀의 누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비밀 누설자는 위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위약 벌 명목으로 3천만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 제12조(관련법규의 준수 및 청렴의무)

“수탁자”는 위임 받은 업무를 수임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동의한다.

- ① 뇌물이나 향응수수, 편의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제 1항에 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취하는 계약해지 및 손해사정 업무의뢰 정지 등에 대한 제한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③ 뇌물이나 향응수수, 편의제공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위한 “위탁자”的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한다.

- ④ “수탁자”는 본 계약관련 “위탁자”의 감독당국의 검사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며, 기타 “위탁자”에 대한 대내외 검사 시 필요한 수검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위탁자”의 수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민원관련 준수사항)

-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손해사정 업무수행 중 보험금 청구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보험금의 지급 여부, 지급금액 및 기타 여하한 사유로 분쟁이 예상되거나 “위탁자”에게 민원 등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민원예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탁자”에게 통지된 민원 예상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수탁자”의 임원 1인이 본건의 조사자로 추가 지정되어야 하며, 지정된 임원은 향후 본 건 종결시까지 본건 최종 책임자로써 밀착관리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항 및 2항에 따라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책~~ 등이 발생하거나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기간 동안 2회 이상의 대외민원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손해사정 업무위임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5조(분쟁처리)

-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판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② 본 계약에 관련하여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인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10월 04일

당사자 “위탁자”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20층

상호: (주)KB손해사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7-48759

대표이사: 고 낙현 (한)



당사자 “수탁자” 주소:

상호:

106-86-30223

사업자등록번호: 리카온화재해상  
자동차손해사정(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1로 70  
호서대벤처타워 807호



대표: 서비스 (한)손해사정

[붙임 1]

## 보수정산 기준표

### ① 3종대물 중 자동차가 아닌 특수피해물 보수 기준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1천만원 미만	기본료	660,000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5.06	1,012,000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4.18	1,254,000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3.74	1,87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88	2,882,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20	4,40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5	5,841,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61	8,03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27	12,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11	22,22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02	30,690,000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0.91	45,050,000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0.4가산	
100억원 초과금액	0.2가산	

- 주) 1.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또는 기본료)을 적용한다.
2.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한 후 보수를 인정한다.

### ② 손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보험금 사정업무만을 위탁한 경우 보수기준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적용기준
500만원까지	기본료	250,000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4.5%	450,000	손해사정 금액은 과실상계 이전 금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3.6%	720,000	기준으로 적용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3.0%	1,500,000	(간접손해 비용 제 외)
5천만원초과	2.5%	최고 1,800,000	

- 주) 1. 특수피해물을 제외한 세차기, 수입이륜차, 자전거, 제트스키등 당사자간 협의 후 보험금 사정업무만 의뢰하는 피해물에 적용한다.(단, 세차기 보수기준은 ②-표1을 적용한다.)

2. 이 보수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된 보수가 차하위 구분에 의한 기준액(또는 기본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
3. 보험사기를 입증하여 면책 처리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손해사정금액을 별도로 정한 후 보수를 인정한다.

## ②-표1

손해사정금액	요율(%)	기준액(원)	적용기준
500만원까지	기본료	300,000	손해사정 금액은 과실상계 이전 금액 기준으로 적용 (간접손해 비용 제 외)
5백만원초과 1천만원까지	5.0%	500,000	
1천만원초과 2천만원까지	4.0%	800,000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3.0%	1,500,000	
5천만원초과	2.5%	최고 1,800,000	

## ③ 선임 손해사정사 여비교통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항공, 철도, 선박, 기타대중교통	일반석기준 실비	
업무용 승용차	유류대 및 통행료 실비	
일비(식비포함)	30,000원	 
숙박비(1일당)	40,000원	

- 주) 1. 대한민국 내 선임손해사정사 법인의 본 지점이 소재하는 동일지역(시단위기준)의 여비교통비는 일비만을 지급한다. 단, 보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타 지역소재 조사자가 시외 출장한 경우에는 상기 여비교통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감정인 감정료 인정기준의 경우 건축물 안전진단시 일비는 제외한다.)
2. 일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지급한다.(일비, 숙박비는 1일당 금액임)
  3.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실비를 정할 수 있다.

[붙임 2]

## 세부 평가 항목 ☆☆ ☆

### ① 일반 Survey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업무 인프라	인적자원	손해사정사, 기술자문위원, 자격증보유 현황
	물적자원	전지역 업무 수행 가능 여부 자체 전산 설비 보유 여부
업무 능력	신속성	사고현장 방문 및 초동조사 적정성
		중간보고서 소요일수
	과정관리	사고조사 및 손해액 조사가 충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
		업무협조도
	정확성	서비스업체의 전반적인 처리 과정 및 결과 만족도
		보고서 내용 및 품질 수준
	민원관리	민원제기 여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적 보안	개인정보처리, 보호 관련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여부
		개인정보처리, 보호 관련 지침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여부
	물리적 보안	외부의 개인정보 접근 차단을 위한 장소, 시설 등 운영여부 평가
	기술적 보안	전산시스템상 접근권한 관리 및 통제 여부
		보안프로그램 및 보안 유지를 위한 적정 전산 시스템 운영 여부